의안번호	2200835
의 뢰 인	안도걸 의원
회 답 일	2024. 8. 5.
추계번호	24E12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초등학생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추가,
고등학생 이하 교육비 공제한도 상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생에 대한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지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2026년 3,309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1조 4,505억원(연평균 2,901억원)으로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안 제59조의4제3항)	−3,309	−3,121	−2,902	−2,680	−2,493	−14,505	−2,901

※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서 가계별 지출상황에 따라 실제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table>
<tr><th>연번</th><th>조·항
(조제목)</th><th>주요내용</th><th>비고</th></tr>
<tr><td>1</td><td>안
제59조의4
제3항
(특별
세액공제)</td><td>○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상향 및 초등생 사교육비 공제 신설
– (현행)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등 근로소득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출(고등학생 이하 300만원/인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5% 공제)
– (개정안)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u>초등학생에 대한 예능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u> 등 근로소득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출(<u>고등학생 이하 400만원/인 한도</u>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5% 공제)
<table>
<tr><th>구분</th><th>현행</th><th>개정안</th></tr>
<tr><td rowspan="2">세액공제
대상범위</td><td>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td><td>(좌동)</td></tr>
<tr><td>(신설)</td><td>초등학생에 대한 예능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td></tr>
<tr><td rowspan="2">세액공제
한도</td><td>본인 무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대학생 900만원/인(대학원생 비대상)</td><td>(좌동)</td></tr>
<tr><td>고등학생 이하 300만원/인</td><td>고등학생 이하 400만원/인</td></tr>
</table></td><td></td></tr>
</table>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9조의4제3항(특별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함

○ 개정안이 2024년 중 의결될 경우 2025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이 되어 2026년 연말정산부터 감면효과가 발생(징수 기준)

- 부칙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

❑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존 교육비와 개정안에 의해 동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사교육비를 나누어 추계함

○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에 지급한 공교육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사교육비 등의 지출액임[1)]

○ 개정안은 초등학생에 대한 예능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고등학생 이하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함

❑ 세액공제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1) 근로소득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가목), 평생교육시설(동 나목), 국외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대학교)(동 다목),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 또는 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동 라목)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조세지출 실적

❑ 2022년 귀속 교육세 특별세액공제 규모는 적용인원 257.5만명, 공제세액 8,35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적용인원은 증가하고(0.2%) 공제세액은 감소함(△5.4%)

[표 4]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규모 추이(귀속년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적용인원	2,627	2,747	2,203	2,241	2,575	2,490
(증가율)	(3.2)	(4.5)	(△19.8)	(1.7)	(14.9)	(0.2)
공제세액	10,975	10,704	8,194	8,345	8,350	9,598
(증가율)	(△0.4)	(△2.5)	(△23.4)	(1.8)	(0.1)	(△5.4)

주: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
자료: 각연도 「국세통계연보」(국세청)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재정패널조사」를 바탕으로 「국세통계연보」 및 「초중고사교육비조사」를 활용한 미시모의실험분석을 통해 2022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함

○ 「재정패널조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2] 상의 가구별 소득, 교육비 지출 등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변경 상황에 대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원 및 금액을 추정함

-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따른 세부 공제내역이 현재 국세청에서 집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3]
- 「재정패널조사」에는 조사되지 않는 학원 등 사교육 기관별 가계의 교육비 지출 내역은 「초중고사교육비조사」(통계청·교육부)의 소득별 및 학교급별 사교육비 자료를 활용함[4]

2) 가계의 소득 및 지출 현황에 대한 조사자료로서, 2022년 현황에 대해 조사한 제15차년도(2023년) 자료가 최근 공표 자료임
3) 「국세통계연보」(국세청) 상의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대한 공제사항을 모두 포함함
4)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서 전체 사교육비 지출액 대비 학교급별 학원비 지출액 비중을 반영함

○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재정패널조사」의 미시모의실험분석을 통한 추정치에 대해 「국세통계연보」의 관련 실적치를 참고하여 조정함

-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공제를 신청한 결정세액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나, 「재정패널조사」의 가구별 미시자료에는 해당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및 결정세액 여부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원 및 금액에 대한 「재정패널조사」 추정치는 「국세통계연보」 실적치보다 과대추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추청치 대비 실적치 비율(이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함

❑ 2022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바탕으로 이후 2026년부터 5년 동안의 추계기간의 세수효과에 대해 분석함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중위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현행 세액공제 제도대상인 기존 교육비의 경우 만 0~18세 인구의 연도별 증감률[5]을 적용하고, 개정안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되는 사교육비의 경우 만 7~12세 인구의 연도별 증감률[6]을 적용함

(3) 추계 결과

❑ (조정비율)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현행 제도 하의 「재정패널조사」 추정치에 대한 「국세통계연보」 실적치의 비율은 대상인원 전체는 0.82, 대상금액 전체는 0.57로 계산됨

[표 5] 현행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관련 대상 인원·금액의 추정치 및 실적치 비교: 2022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과세대상 총급여 구간	추정치(재정패널조사)			실적치(국세통계연보)[1]			조정비율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A	B	C=B×0.15	D	E	F=E×0.15	G=D/A	H=E/B
전체	3,138	98,059	14,709	2,575	55,668	8,350	0.82	0.57
1천만 이하	87	879	132	-	-	-	-	-
1.5천만 이하	59	1,524	229	0	0	0	0.00	0.00
2천만 이하	94	1,937	291	1	6	1	0.02	0.00
3천만 이하	302	8,121	1,218	53	285	43	0.18	0.04
4천만 이하	314	9,149	1,372	148	1,389	208	0.47	0.15
4.5천만 이하	163	4,760	714	128	1,669	250	0.79	0.35
5천만 이하	221	6,795	1,019	157	2,307	346	0.71	0.34

5) ('26년) -3.4%, ('27년) -3.7%, ('28년) -3.2%, ('29년) -3.1%, ('30년) -3.6%
6) ('26년) -5.7%, ('27년) -6.0%, ('28년) -7.6%, ('29년) -8.3%, ('30년) -7.5%

(단위: 천명, 억원)

과세대상 총급여 구간	추정치(재정패널조사)			실적치(국세통계연보)[1]			조정비율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A	B	C=B×0.15	D	E	F=E×0.15	G=D/A	H=E/B
6천만 이하	330	9,508	1,426	356	5,827	874	1.08	0.61
8천만 이하	696	20,374	3,056	663	12,545	1,882	0.95	0.62
1억 이하	364	14,705	2,206	451	11,838	1,776	1.24	0.81
2억 이하	488	19,384	2,908	543	16,744	2,512	1.11	0.86
3억 이하	13	749	112	49	2,002	300	3.82	2.67
5억 이하	2	68	10	16	711	107	7.23	10.39
10억 이하	2	67	10	6	268	40	2.29	4.01
10억 초과[2]	1	40	6	1	77	12	1.00	1.92

주: 1) 실적치는 「국세통계연보」 상의 결정세액 있는 자의 자료임
2) 과세대상 총급여 10억원 초과 구간은 「재정패널조사」 자료가 없는 관계로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과 자녀당 교육비 지출수준 등이 같은 것으로 가정하여 조정비율을 계산함

자료: 「재정패널조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15차년도, 2023년) 및 「국세통계연보」(국세청, 2023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2년 기준 세수효과)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생에 대한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지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할 경우 소득세 수입 감소액은 3,822억원으로 추계됨

○ (현행 공제한도 상향)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규모는 8,834억원으로 추계됨

○ (공제대상 확대) 초등학생에 대한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지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규모는 3,339억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에 따른 전체 세액공제 규모는 1조 2,172억원이며 이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현행(8,350억원) 대비 3,822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표 6]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개정안 세수효과 추계: 2022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총급여 구간	현행 (국세통계연보 실적치)			개정안							현행 대비 세수효과[2]
				현행 공제한도 상향			공제대상 확대			공제세액 합계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D	E	F	I	J	K =J×0.15	L	M	N= M×0.15	O =K+N	P =F−O
전체	2,575	55,668	8,350	2,575	58,892	8,834	3,417	22,409	3,339	12,172	−3,822
1천만 이하	−	−	−	−	−	−	−	−	−	−	−

(단위: 천명, 억원)

총급여 구간	현행 (국세통계연보 실적치)			개정안							현행 대비 세수효과[2]
				현행 공제한도 상향			공제대상 확대			공제세액 합계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D	E	F	I	J	K =J×0.15	L	M	N= M×0.15	O =K+N	P =F−O
1.5천만 이하	0	0	0	0	0	0	0	0	0	0	0
2천만 이하	1	6	1	1	7	1	2	1	0	1	−0
3천만 이하	53	285	43	53	300	45	70	99	15	60	−17
4천만 이하	148	1,389	208	148	1,453	218	199	568	85	303	−95
4.5천만 이하	128	1,669	250	128	1,805	271	156	289	43	314	−64
5천만 이하	157	2,307	346	157	2,453	368	202	794	119	487	−141
6천만 이하	356	5,827	874	356	6,068	910	484	2,485	373	1,283	−409
8천만 이하	663	12,545	1,882	663	13,415	2,012	839	5,107	766	2,778	−896
1억 이하	451	11,838	1,776	451	12,275	1,841	627	5,362	804	2,646	−870
2억 이하	543	16,744	2,512	543	17,701	2,655	673	5,509	826	3,481	−970
3억 이하	49	2,002	300	49	2,122	318	142	1,864	280	598	−298
5억 이하	16	711	107	16	947	142	16	−	−	142	−36
10억 이하	6	268	40	6	268	40	6	259	39	79	−39
10억 초과[1]	1	77	12	1	77	12	1	74	−12	−	12

주: 1) 과세대상 총급여 10억원 초과 구간은 「재정패널조사」 자료가 없는 관계로 5억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과 자녀당 교육비 지출수준 등이 같은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함
2) 개정안에 따른 모든 총급여 구간별 1인당 세수효과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결정세액[「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보다 작게 나타나므로 개정안에 따른 공제세액 모두를 세수효과가 되는 것으로 함

❑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생에 대한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지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

○ 2026년 3,309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1조 4,505억원(연평균 2,901억원)으로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안 제59조의4제3항)	−3,309	−3,121	−2,902	−2,680	−2,493	−14,505	−2,901

※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서 가계별 지출상황에 따라 실제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성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성은	02-6788-4668	ixsepark@assembly.go.kr